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22.9.)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안 제18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업무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manfis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 201 - 377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